

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일부개정 고시(안)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-'21.9.30, 한국중견기업연합회-

□ 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(안 제8조의3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(중견기업계 의견)
<p>제8조의3(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) ① 제4조 제3항제2호의 신산업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혁신기업 단체의 장이 추천한 제품을 말한다. 1 ~ 5</p> <p>② 제1항의 신산업 제품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요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 1. 세부품목을 직접 생산·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 2. 공공기관의 세부품목에 대한 전년도 구매액 또는 당해연도 구매예정금액(구매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) 5억원 이상</p> <p>③ 제1항의 혁신기업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벤처기업협회 2.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.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4.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5. 코리아스타트업포럼 6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단체</p>	삭 제	<p>(신산업 제품 특례 반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신산업의 투자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 기회 축소 등 투자 위축 우려가 큼 ○ 초기 시장형성 단계인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른 진입 제한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의 포지티브 방식의 지원책 필요 ○ 중소→중견→글로벌 기업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○ 특히 중기간 경쟁제도의 경우 한 번 지정될 경우 제도에 안주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장기간 일정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행태 등 악용하는 사례 발생 우려 큼 ○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군의 보호 정책보다는 기업 간 자율경쟁 환경 조성 필요